



열린마음, 큰 생각, 행복한 강진



2017 남도답사1번지
강진방문의해
VISIT GANGJINSDI-2, KOREA

2017년 대구면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7. 4. 12.(수) ~ 4. 14.(금) / 3일간
- 대상기간 : 2015. 4. 1. ~ 2017. 3. 31. / 2년간
- 지적사항 : 19건
 - 행정상 조치 : 시정 7건, 주의 12건
 - 재정상 조치 : 2건, 46천 원(부과 46)



강진군
[기획홍보실]

2017년 대구면 종합감사 결과

I 총 평

1. 일반행정 분야

- 어려움으로 인하여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고령층 여성 어르신을 중심으로 향동마을 10여 명과 수동마을 여성 농민 2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성농민 마을 한글학교를 운영하여 한글을 깨우쳐서 읽고 쓰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었음.
- 아름다운 대구면 만들기의 일환으로 매년 3월 10일을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도로변 및 마을 주변등의 쓰레기등을 수거하여 지역 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 하였음.

2. 외계분야

- 법인카드 사용시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회계업무 담당자는 연간 계획등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공사 및 물품을 구입하면서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등 회계업무 연찬이 필요하였음.

3. 건설분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 하자검사는 연 2회 이상, 최종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에 실시하고 즉시 계약대상자에게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함에도, '15년부터 '17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26건에 대해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4. 사외복지 분야

-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급한 후 분기별 정산을 하고 집행내용을 카드결재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서류 및 관계된 모든 서류를 일괄 편철해야 함에도 순서 없이 편철하여 정산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며, 의사무능력(미약)자를 급여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급여점검표와 일부 영수증 사본만을 징구하고, 급여지출에 따른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5. 농업분야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지침에 의하면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신청한 농업인에 대하여는 관계자료를 면밀히 검토 한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학교장으로부터 학적확인 후에는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또한 농지원부를 정리하지 않는등 농업업무를 추진 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

II 감사 결과

1. 지적 건 수 : 19건

- 행정상 조치 : 시정 7건, 주의 12건
- 재정상 조치 : 2건, 46.1천 원(기타 46.1)

2. 지적사항 목록

(단위 : 건, 천 원)

연번	분 야	건 명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천 원)			기타
			시정	주의	계	회수	부과	
계		19건	7	12	46.1			46.1
1	회계분야	예산집행 관련 회계서류 작성 소홀		○				
2	“	법인카드 사용시 현금영수증 처리 부적정		○				
3	“	예산의 지출결의서 적용 부적정		○				
4	“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미 이행	○					45
5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				
6	“	업무추진비 운영관리 소홀		○				
7	“	예금이자 수입 미불입	○					1.1
8	건설분야	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9	“	공사 지연 배상금 적용 부적정		○				
10	“	공사계약 체결업무 소홀		○				
11	“	불필요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작성		○				
12	“	농촌 빈집정비사업 사후관리 소홀	○					
13	사회복지	경로식당 운영비 정산 미비 및 관리소홀		○				
14	“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					
15	“	회장 장려금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징구 부적정		○				
16	농업분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확장대상 미통보 등 업무 소홀		○				
17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원부정리 소홀	○					
18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업무 소홀		○				
19	“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현장확인 업무 소홀	○					

Ⅲ 지적사항 요약

1. 예산집행 관련 회계서류 작성 소홀

-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회계 담당자가 당연히 행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함.

2. 법인카드 사용시 현금영수증 처리 부적정

- '15년 3월부터 '16년 1월까지 7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계획등을 수립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승인으로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지출한 사실이 있음.

3. 예산의 지출결의서 적용 부적정

- 『강진군재무회계규칙』 제121조3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49호서식(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품구입시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공사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4.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미 이행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르면, 1,000천 원 이상 물품 구입계약시 계약금액의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되, 산출결과 1건 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매입 하여야 함에도 '16년 5월 '가로경관조성에 따른 물품구입'과 같은해 12월 '지방도 819호선 꽃길 조성사업 사업비 집행(꽃잔디)'을 하면서 지역개발공채 45,000원을 매입하지 않음

5.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등에 집행하여야 하며, 소규모 시설장비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16년과 '17년에 2건의 사무용품비를 지출하면서 행사운영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함.

6. 업무추진비 운영관리 소홀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7. 예금이자 수입 미 불입

- 『지방재정법』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의 규정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토록 하여야 함에도, '15년 2건 720원, '16년 2건 380원을 불입하지 않음.

8. 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69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는 연2회 이상, 최종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에 실시하고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15년부터 '17년까지 총 26건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9. 공사지연 배상금 적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수하여 공사계약시 지연배상금은 1000분의 0.5를 적용하여야 하나, '17년 18건을 계약한 공사에 대하여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대로 지연배상금을 적용함.

10. 공사계약 체결업무 소홀

- '17년도에 △△마을 암거설치공사 외 9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설계 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체결을 하였음.

11. 불필요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제14조 1항, 시행령 제50조 1항 1호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17년 △△마을 암거설치공사 외 9건에 대하여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12. 농촌 빈집정비사업 사후관리 소홀

-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2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철거 즉시 보조사업자가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15년 4건, '16년 4건에 대해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13. 경로식당 운영비 정산 미비 및 관리소홀

- 『경로식당 운영비 집행 지침』에 의하면 집행 후 분기별 정산하고 집행내용을 카드결재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서류 및 관계된 모든 서류를 일괄 편철해야 하고, 통장과 집행서류를 일자별 목록별로 정리하지 않고 편철하여 정산내용 확인이 어려움.

14.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대상자로 '15년부터 '17년까지 각각 6명을 지정하였으나, 급여 점검표와 일부 영수증 사본만을 징구하고 급여지출에 따른 증빙자료는 징구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15.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징구 부적정

- '13년 조례제정 이후인 '15년부터 '17년도까지 총 23건의 신청서를 받아 구비서류를 징구 하였으나 행정정부 공동이용을 통해 20건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비서류로 징구하여 부적정하게 처리 하는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확정대상 미통보 등 업무소홀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업무를 추진하면서 타 장학금 수령여부, 영농기준 충족여부, 공부 소유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학교장으로부터 학적확인 후 지원대상 여부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통보하지 않는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7.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원부 정리 소홀

- '15년 4월에 농업용창고 신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신고('16년 3월 4일까지 완료)한 농지등 4건에 대해 '17년 4월 감사일 현재 까지 농지원부를 정리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농지원부 관리에 소홀히 하였음.

18.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마우처 지원사업 업무 소홀

-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로 농업육성에 기여 유도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농어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여성농어업인 마우처 지원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9.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현장확인 업무 소홀

- 농기계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부결정된 내역을 지역농협에 통보하지 않았음은 물론 농기계 공급확인을 위한 현장확인등 절차를 무시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는 등 농기계지원업무를 소홀히 하였음.